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No. 12
식물위생증명서들
Phytosanitary Certificates

(2011)

FAO/IPPC 사무국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에서 출판하였다.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에서 마련하였다."

본 출판에서 사용한 명칭과 자료들의 표현은 어떠한 국가, 영토, 도시 혹은 지역이나 이들의 정부당국, 또는 이들 국경 및 경계에 대한 한계와 관련하여 UN FAO 측의 어떠한 의견의 표현도 암시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제조업체의 상품에 대한 혹은 이들이 특허권이 주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이들을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유형을 가진 다른 것들보다 선호되어 FAO에서 이들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정보 산물에서 표현된 의견은 저자의 의견이며 반드시 FAO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모든 권한은 보호된다. FAO는 이 정보 산물에서 자료들이 재생산되고 배분되는 것을 권장한다. 비상업적인 사용은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허가된다. 교육목적을 포함하는 재판매 또는 다른 상업적 목적을 위한 재생산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FAO 저작권 자료의 재생산 또는 배포를 위한 권한과 라이선스와 관련된 모든 요청은 이메일 copyright@fao.org 또는 이태리 로마 00153 Viale delle Terme di Caracalla FAO Research and Extension, Office of Knowledge Exchange, Publishing Policy and Support Branch, Chief에게 보내져야 한다.

"© QIA, 2014 (한국어 번역)"

"© FAO, 2014 (영문판)"

출판 내력

이 부분은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다.

1998. 5월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제5차 전문가 위원회(CEPM)에서 초안 검토

1999. 5월 제6차 CEPM에서 회원국 의견수렴이 승인됨

1999-2000 회원국 의견수렴

2000. 11~12월 수정된 기준안이 2차 임시기준위원회(ISC)에서 채택하도록 제출됨

2001. 4월 제3차 ICPM에서 채택됨

ISPM 12: 2001. *Guidelines for phytosanitary certificates*. Rome, IPPC, FAO

2006 제1차 식물위생조치 위원회(CPM)에서 개정이 요청됨. 주제 번호 2006-003

2006. 11월 작업지시서 38번이 기준위원회에 의해 승인됨

2008. 2월 ISPM 12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작업단 회의에서 초안 작성

2009. 5월 기준위원회에서 초안이 검토됨

2009. 6월 정규 절차에 의한 회원국 의견수렴을 위하여 승인됨

2010. 2월 회원국 의견에 따라 간사가 초안을 수정함

2010. 5월 기준위원회 작업단(SC-7)에서 논의하고 수정함

2010. 11월 기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CPM-6에 상정하기로 결정

2011. 3월 CPM-6에서 채택

ISPM 12:2011 식물위생증명서. IPPC, Rome, FAO

2011. 6월 전자증명관련 작업단

2012. 2월 ePhyto 간사 및 IPPC 운영위가 초안 개발

2012. 4월 기준위원회에서 초안 검토 및 회원국 의견수렴 승인

2012. 6월 회원국 의견수렴 실시

2012. 11월 회원국 의견에 따라 간사가 초안 수정

2013. 6월 중요한 우려에 대한 의견 수렴

2013. 10월 간사가 의견에 따라 초안 수정

2013. 11월 기준위원회가 채택을 위한 제출을 승인

2014. 4월 CPM-9에서 ISPM 12:2011 부록 1로 승인

ISPM 12 2011: 부록 1 전자식물위생증명서, 표준 SML schema과 교환 메커니즘
대한 정보(2014). Rome. IPPC, FAO

출판역사 최종 수정 2014. 4월

목 차

서론

- 채택
- 범위
- 참고문헌
- 용어
- 요건의 개요

배경

식물위생증명에 관한 요건

1. 식물위생증들
 - 1.1 식물위생증명서들의 목적
 - 1.2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종류와 서식
 - 1.3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첨부물
 - 1.4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들
 - 1.5 전달방식
 - 1.6 유효기간
2.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들에 취해질 수 있는 활동
 - 2.1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증명된 사본(certified copies)
 - 2.2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재발급 (replacement)
 - 2.3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수정 (alterations)
3. 수입국과 식물위생증명서들을 발급하는 NPPOs들이 고려할 사항
 - 3.1 허용할 수 없는 식물위생증명서들
 - 3.1.1 무효한 식물위생증명서들
 - 3.1.2 부정 식물위생증명서들
 - 3.2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작성과 발급에 관련된 수입요건
4.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작성과 발급을 위한 특정 고려사항
5. 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완성하기 위한 지침과 요건
6. 재수출 상황과 경유에 대한 고려 사항

- 6.1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고려사항
- 6.2 경유

부속서 1: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견본

부속서 2: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 견본

부 록 1: 전자증명, 표준 XML 체계와 교환방식에 대한 정보

부 록 2: 부기사항을 위한 추천 문장

서론

채택

이 기준은 2001년 4월 3차 ICPM에서 식물위생증명서들에 대한 지침으로 채택되었다. 첫 번째 개정판이 2011년 3월 6차 CPM에서 ISPM 12:2011로 채택되었다.

범위

본 기준은 식물위생증명서들¹⁾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및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에 대한 요건 및 지침을 제공한다.

국가 식물보호기관(NPPOs)에 의해 확립되어야 하는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의 요건과 구성요소에 대한 특정한 지침은 ISPM 7:2011에 설명되어 있다.

참고문헌

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Rome, IPPC, FAO.

ISPM 1. 2006. *Phytosanitary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lants and the application of phytosanitary measures in international trade*. Rome, IPPC, FAO.

ISPM 5. *Glossary of phytosanitary terms*. Rome, IPPC, FAO.

ISPM 7. 2011. *Phytosanitary certificates*. Rome, IPPC, FAO.

ISPM 13. 2001. *Guidelines for the notification of non-compliance and emergency action*. Rome, IPPC, FAO.

ISPM 18. 2003. *Guidelines for the use of irradiation as phytosanitary measures*. Rome, IPPC, FAO.

ISPM 25. 2006. *Consignments in transit*. Rome, IPPC, FAO.

ISPM 32. 2009. *Categorization of commodities according to their pest risk*. Rome, IPPC, FAO.

¹⁾ IPPC는 수출 목적으로는 “식물위생증명서”, 재수출 목적으로는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라고 부른다. 이 기준에서 이들 용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와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사용된다. “식물위생증명서들(복수)”는 이 두 가지의 증명서를 포함할 때 사용된다.

용어정의

식물위생 용어의 정의는 ISPM 5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건의 개요

식물위생증명은 화물이 식물위생 수입요건에 부합하고 NPPO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사용된다. 수출 및 재수출 식물위생 증명서는,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고 NPPO에 의해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공적 직원에 의해서만 발급될 수 있다.

수출 식물위생증명서는 통상적으로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규제물품이 재배되거나 가공된 국가에서 발급된다.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는, 화물이 감염위험 대상이 아니고, 수입국의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하며, 식물위생증명서 원본이나 증명된 사본이 있는 경우에, 재수출 국가(상품이 재배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국가)의 NPPO에 의해 발급된다.

NPPO들은 IPPC의 식물위생증명서들 견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식물위생 정보가 식물위생증명서들의 공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첨부 될 수 있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화물과 동반되거나, 우편 또는 다른 방법, 또는 국가간 합의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NPPO들은 표준화된 언어와 내용의 구조와 교환 방식을 사용한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이 발급된 후에 화물의 식물위생 상태가 바뀔 수도 있으므로,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유효기간이 제한할 수도 있다. 수출 또는 수입국가의 NPPO는 관련 조건을 만들 수도 있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재발급, 증명된 사본, 수정의 경우, 특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무효하거나 부정의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수용되지 않는다.

특히 수출 수입위생증명서 발급이 재수출국에 의해 요구되지 않거나, 원산 국가에서 특정한 식물위생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수출에 대한 특정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배경

식물위생증명은 화물이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제무역되는 대부분의 식물, 식물성 산물과 다른 규제물품에 적용된다. 식물위생증명은, 수입국 내의 재배되거나, 재배되지 않거나/관리되지 않는 식물과 야생 식물류(수생식물 포함)와 서식지와 생태 시스템을 포함하는 식물보호에 기여한다. 식물위생증명은 국제적으로 동의된 서류와 관련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식물, 식물성 산물과 다른 규제물품의 국제무역도 촉진한다.

IPPC 협약 V.2(a)는 식물위생증명서들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의 발급과 관련되는 검사 및 기타 활동은 공식적인 국가식물보호기관에 의해서만 또는 그 권한 하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수입 체약국이 신뢰할 만한 문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자격이 있고 공식적인 국가식물보호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를 대신하여 활동하고, 이들 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지식과 정보로 통제되는 공적 직원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또한 ISPM No. 7 참조]

이는 1997년 FAO 총회에서 IPPC 협약 개정을 채택하면서 명확하게 설명되었다; “‘국가식물보호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춘 공적 직원’에는 국가 식물보호기관의 직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문장에서 “공적”은 개인 회사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고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직원을 포함하여”는 해당 직원이 국가식물보호기관에 직접 고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IPPC 협약은 또한 식물위생증명서 견본 사용 요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V.3).

“각 체약국은 그들의 영토로 수입되는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 또는 기타 규제물품의 화물에 대해 이 협약서의 부속서에 제시된 견본과

모순되는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첨부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부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기술적으로 정당화 될 때로 한정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에 관한 요건

1. 식물위생증명서들

1.1 식물위생증명서들의 목적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식물, 식물성 산물 및 다른 규제물품이 수입국의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하며, 증명 문구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다른 나라로의 재수출 증명을 보조하기 위하여도 발급될 수 있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발급되어야 한다.

1.2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종류와 서식

IPPC 협약 부속서에는 두 종류의 증명서들 서식 견본이 있다: 수출 목적의 “식물위생증명서”(본 기준의 부속서 1 참조)와 재수출 목적의 “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본 기준의 부속서 2 참조).

수출 목적의 식물위생증명서는 통상적으로 원산국의 NPPO에 의해 발급된다. 수출 식물위생증명서는 화물을 설명하고 증명 문구, 부기사항, 소독처리 기록을 통하여, 화물의 식물위생 상태가 수입식물위생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재수출 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식물, 식물성산물과 다른 규제물품의 특정 재수출의 경우에도, 화물의 식물위생 상태가 재수출국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예; 검사)에는 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화물 내의 상품이 그 국가 내에서 재배되거나 원 성질을 바꾸도록 가공되지 않고,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원본 또는 증명된 사본이 있는 경우에만, 재수출국의 NPPO가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는 수출국가에서 발급된 식물위생증과 연계를 제공하고,

재수출 국가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식물위생 상태의 변화를 고려한다.

두 가지 양식의 식물위생증명서들의 발급을 관리하는 절차와 합법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동일하다.

IPPC 협약 V.2(b)에 의하면, IPPC 식물위생증명서들의 견본은 식물위생 증명서들을 작성에 필요한 표준 문구들을 제공한다. 쉽게 확인하고 필수적인 정보들이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물위생증명서들의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NPPO들은 한 개의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와 한 개의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 양식을 사용하고, 위조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International Phytosanitary Portal(IPP)(<https://www.ippc.int>)에 견본을 게시하도록 권장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종이 양식 또는 수입국의 NPPO가 허용하는 경우 전자양식일 수 있다.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종이 양식 식물위생증명서의 증명 문구를 포함한 문구와 데이터와 전자적으로 동일하며, 수출국의 NPPO에서 수입국의 NPPO로 법적으로 입증되고 안전한 전자 방식으로 전송된다.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는, 전자적 내용 작성 또는 종이 양식의 출력 후에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종이 증명서의 전자양식 전송(예; 이메일)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NPPO들은 종이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위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예를 들면, 특수 종이, 워터마크 또는 특수 인쇄, 적용해야 한다. 전자 증명서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안전장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수출국 또는 재수출국의 NPPO에 의해 모든 요건이 충족되고, 날짜, 서명, 관인, 봉인, 표식이 되거나 전자적으로 완성되어야 유효하다.

1.3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첨부물

식물위생증명서들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양식의 공간을 초과할 경우 첨부물이 추가될 수 있다. 첨부물의 정보는 식물위생증명서들에

요구된 정보만을 포함해야 한다. 첨부물의 모든 페이지는 식물위생 증명서들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식물위생증명서들에서 요구 되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날짜, 서명 및 관인이 있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해당란에는 첨부물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첨부물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매기고 해당 쪽 수를 식물위생증명서들에 기재하여야 한다. 멸종위기종 국제무역 협약(CITES) 확인서들 같은 다른 문서들은 식물위생증명서들과 함께 화물과 함께 송부할 수 있으나,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첨부물이어서는 안 되고, 식물위생증명서 상에 언급되어서도 안 된다.

1.4 전자 식물위생증명서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수입국의 NPPO가 수용하는 경우 발급될 수 있다.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들이 발급되는 경우, NPPO들은 표준화된 언어, 내용의 구조와 교환 양식을 사용하는 증명서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부록 1(개발 중이며 필요시 첨부물을 수정)은 표준화된 언어, 내용의 구조와 교환 양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들은 다음 조건일 경우 사용될 수 있다:

- 발급 방법, 전송과 안전 수준이 수입국과 관련된 다른 국가들의 NPPO에 의해 수용 가능
- 제공된 정보가 IPPC 식물위생증명서들의 견본과 일치
- IPPC 협약 하의 식물위생증명의 목적에 부합
- 발급 NPPO가 적절하게 설립되었고 법적으로 인정됨

1.5 전달방식(Mode of transmission)

식물위생증명서들은 발급 대상인 화물과 같이 보내져야 한다. 식물위생 증명서들은 수입국의 NPPO가 수용하는 경우,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따로 보낼 수도 있다. 전자 식물위생증명서의 경우, 관련 NPPO 직원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경우, 식물위생증명서들은

화물이 도착할 때 수입국의 NPPO에 제출되어야 한다.

1.6 유효기간(Duration of validity)

화물의 식물위생 상태는 식물위생증명서들이 발급된 후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수출국 또는 재수출국의 NPPO는 식물위생증명서들의 발급 후 수출 전까지의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수출국 또는 재수출국의 NPPO는, 수출 전 또는 재수출 전에 화물이 감염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포장(봉인된 carton과 열려진 포장), 보관환경(개방과 밀폐), 상품과 수송 수단의 종류, 계절과 병해충 종류에 의해 영향 받는다. 화물이 감염 위험대상이 아니거나 상품이 수입국의 수입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유효기간 후에도 재수출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수입국의 NPPO도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유효 기간을 수입요건의 일부로 규정할 수 있다.

2.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들에 취해질 수 있는 활동

2.1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증명된 사본 (Certified copies)

증명된 사본은, 원본 식물위생증명서와 진실로 내용이 동일하다고 NPPO에 의해 확인된(관인이 찍히고, 날짜와 확인 서명된) 원본 식물위생증명서의 사본이다. 증명된 사본은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될 수 있으며, 원본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 사본은 기본적으로 재수출 목적으로 사용된다.

2.2 재발급(Replacement) 식물위생증명서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식물위생증명서가 이미 발급된 화물에 대하여 수출자가 요청할 경우 재발급 될 수 있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예;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들의 파손; 주소, 도착 국가 또는 도착항 변경;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 발급되며, 재발급 대상 식물위생증명서들이

발급된 나라의 NPPO에 의해서만 발급된다.

모든 경우에 발급한 NPPO는 수출자에게 그 화물에 대하여 이미 발급된 원본 식물위생증명서들과 증명된 사본들을 반납하도록 요구해야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재발급과 관련한 다른 요건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재발급을 위하여 반납된 식물위생증명서들은 발급한 국가 NPPO에 의해 보관되고 취소되어야 한다. 새로운 식물위생증명서들에 재발급 대상 증명서와 동일한 번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원 증명서의 번호는 다시 사용되어서는 않된다.
- 이미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들이 반납되지 못하고 NPPO의 관리를 벗어나는 경우(예를 들면, 분실하거나 다른 나라에 있거나), NPPO는 재발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규 식물위생증명서에 재발급 되는 식물위생증명서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본 증명서는 (날짜)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 (번호)를 대체하며 취소한다”는 부기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3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수정 (Alterations)

수정은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유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한다. 그러나 만약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원본 식물위생증명서 위에, 발급한 NPPO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발급한 NPPO에 의해 관인이 찍히고 날짜와 확인 서명되어야 한다.

3. 수입국과 식물위생증명서들을 발급하는 NPPO들이 고려할 사항

수입국은 규제물품에 대해서만 식물위생증명서를 요구 한다. 규제물품이란 식물, 식물성 산물이나 식물위생 조치가 기술적으로 정당한 빈 컨테이너, 차량과 식물 이외의 생물체(organisms)도 포함될 수 있다.

수입국의 NPPO는 규제병해충 유입의 잠재성이 없을 정도로 가공된 식물성 산물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다른 물품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서들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IPPC VI.2와 ISPM 32:2009

참고).

NPPO들은 식물위생증명서들이 필요하다는 기술적 정당성에 관한 관점에 차이가 있을 경우 양자 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에 대한 요건은 투명성, 비차별, 필요성과 기술적 정당성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ISPM 1:2006 참조).

3.1 수용할 수 없는 식물위생증명서

증명서가 무효 또는 위조로 판단되었을 경우, 수입국 NPPO는 식물위생증명서들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수용할 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문서와 관련하여서는 발급국가의 NPPO는 ISPM 13(2001)에 기술된 대로 가능한 조속히 통보 하여야 한다. 수입국의 NPPO가 식물위생증명서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식물위생증명서들에 대한 유효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재수출국가의 NPPO의 즉각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출 또는 재수출 국가의 NPPO는 필요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식물위생증명서들의 발급 시스템을 검토하여, 식물위생증명서들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신뢰를 확인해야 한다.

3.1.1 무효한 식물위생증명서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 무효다.

- 불완전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 부정 또는 오해하기 쉬운(misleading) 정보
-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정보
- 식물위생증명서 견본과 불일치하는 용어나 정보
- 공인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한 정보 첨가
- 공인되지 않은(관인, 날짜 또는 확인 서명되지 않은) 수정이나 삭제
- (재수출을 위하여 증명된 사본으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읽을 수 없는 경우 (예; 지저분하게 쓰여 졌거나(badly written), 손상됨)

- 증명되지 않은 사본
- (전자식물위생증명서의 경우) NPPO에 의해 공식 허가되지 않은 전송 방법으로 전달
- 수입이 금지된 식물, 식물성 산물, 다른 규제 물품에 대한 식물 위생증명

이들은 식물위생증명서들을 거부하거나,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사유가 된다.

3.1.2 부정 식물위생증명서들

부정 식물위생증명서들은 대표적으로 다음을 포함 한다:

- 공식 승인되지 않은 서식에 발급
- NPPO에 의해 날짜, 관인, 표시 또는 봉인, 서명되지 않은 경우
- 공적 직원으로 공식 승인 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발급

부정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유효하지 않다. NPPO가 발급한 식물위생 증명서들은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전자식물 위생증명서의 경우,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전자증명 메카니즘의 한 요소이다. 수출국의 NPPO는 위반사항이 통보되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작성과 발급에 관련된 수입요건

수입국은 종종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작성과 발급에 있어 지켜져야 할 수입요건을 명시한다. 수입국이 요구하는 예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식물위생증명서가 특정 언어 또는 목록에 제시된 언어 중 하나로 작성 (그러나 FAO의 공식언어 중 하나를, 가능하면 영어, 수용하도록 권장됨)
- 검사 또는 소독처리 후 발급까지 기간, 식물위생증명서들의 발급에서 수출국가 출발까지의 기간
- 수출위생증명서는 타이핑되거나, 또는 손으로 작성될 경우, 알아볼 수 있는 대문자로 작성되어야 함 (사용 언어가 가능한 경우)

- 화물의 표기나 신고수량에 사용되는 측량 단위

4.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작성과 발급을 위한 특정 고려 사항

식물위생증명서들은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NPPO에 의해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공적 직원들에 의해서만 발급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만 발급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관련된 각각의 화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에는 식물위생사항과 관련된 정보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동물 및 인간 위생 관련사항, 농약잔류, 방사성 또는 상업적인 정보(예를 들면 신용장) 또는 품질 같은 식물위생요건과 관련되지 않은 문구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통상 식물위생증명서들과 식물위생증명과 관련되지 않은 서류(예; 신용장, BL, CITES 증명서)들 간의 교차 참조를 쉽게 하기 위하여, 관련문서의 인식번호, 표식(symbol) 또는 관련 서류번호를 연계하는 참조(notes)를 수출위생증명서들에 첨부할 수 있다. 이들 참조는 필요할 때만 사용되어야 하며, 식물위생증명서들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의 모든 항목들이 완성되어야 한다. 기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식 허가되지 않은 첨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None” 이라고 기재하거나 또는 칸 전체에 선을 그어야 한다.

화물의 재수출을 위하여는 원산지 국가로부터의 특정 정보가 필수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에 없을 수도 있다 (예,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 관련 정보 부족 또는 식물위생증명서 자체가 재수출 국가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 특정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재수출국 내에서 충족되지 못할 경우,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는 발급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이 적용될 수도 있다:

- 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재수출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수출자의 요청에 의해서, 재수출국에 의해 요청된 NPPO에게 원산 국가의 NPPO가 추가의 식물위생정보(예, 재배기간 중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에 필수적일 수 있다. 이 정보들은 부기사항 란에 소제목 “추가공식적 식물위생 정보” 밑에 부기될 수 있다. (section 5 참고)
- 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재수출국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자가 요청할 경우, 원산국의 NPPO가 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이는,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에 필수적인 추가의 식물위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화물에 적용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재수출국은 화물의 구분(identity)이 유지되고 감염 위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은 출발 전에 발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화물 출발 후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될 수 있다:

- 화물의 식물위생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 수출국 NPPO가 화물이 출발하기 전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료채취, 검사와 소독처리를 실시한 경우

이들 범주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되어서는 안 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이 출발 후 발급되었다면, 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검사 일자가 부기란에 명시되어야 한다.

5.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서식을 완성하기 위한 지침과 요건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항목을 완성하기 위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진하게 표시된 표제는 견본 증명서 서식 항목이다, 부속서 1 견본 참조]

번호. _____

각각의 수출 식물위생증명서는, 화물의 역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감사를 용이하게 하며, 기록유지에 필요한 고유한 구분 번호를 가져야 한다.

_____의 식물보호기관

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명이 NPPO의 이름과 함께 기재된다.

수신처 : _____의 식물보호기관(들)

수입국의 이름이 기재된다. 경유 국가와 수입국가가,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필요를 포함한 특정 식물위생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두 국가명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고 경유 국가가 명시되어야 한다. 각 국의 식물위생수입 또는 경유 요건이 충족하고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물이 수입되고 난 후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경우, 두 나라의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충족된다면, 양국가의 이름이 기재될 수 있다.

I. 화물에 대한 기술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_____

이 정보는 수출국 NPPO에 의한 역추적 및 감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물의 출처를 구분한다. 수출자의 주소는 수출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외국주소를 가진 국제회사가 수출자인 경우, 현지 수출대리인이나 선주의 이름과 주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화물 수취인의 이름 및 주소 : _____

이 곳에 기재되는 이름과 주소는, 수입국의 NPPO가 화물 수취인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반 수입물을 역추적하는데 충분하도록 상세하여야 한다. 수입국의 NPPO가 이 용어 사용을 허가하고 관련 위험을 수용한다면, 화물수취인을 모르는 경우, "주문자(To order)"가 사용될 수도 있다.

포장(packages)의 수 및 설명 : _____

포장의 수와 설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수입국의 NPPO가 해당 화물과 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예, 곡물과 벌크 목재)에는 컨테이너 그리고/또는 화물객차(railcars)가 포장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숫자가 포함된다(예, 10개 컨테이너). 벌크 운송의 경우, “벌크 상태”라는 용어가 쓰일 수도 있다.

식별 표식 (Distinguishing marks) : _____

포장 상의 식별표식(예, 롯트 번호, 일련번호 또는 상표)과 운송수단 구분 번호 또는 이름(컨테이너나 화물객차 구분번호 또는 벌크운송이 경우 선박 이름)은 화물을 구분하는데 필요하다면,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Place of origin) : _____

원산지는 상품이 자라거나 생산된 장소와 규제병해충으로 인한 감염이나 오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일컫는다. 모든 경우에 원산 국가(들)는 기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화물은 원산지에서 식물위생 상태를 얻는다. 국가들은 병해충 무발생지역,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이름이나 코드를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병해충 무발생지역,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더 자세한 사항은 부기사항 란에 제공될 수 있다.

상품이 재포장, 저장 또는 이동되었다면, 그 시간 동안 새로운 장소에서 규제병해충의 감염이나 오염에 의해 식물위생상태가 변했을 수 있다. 상품의 가공, 살균 (disinfecting) 또는 소독처리에 의해 식물위생상태가 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감염이나 오염이 제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품의 식물위생 상태가 한 곳 이상에서 습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최초의 장소를 괄호 안에 넣고 각각의 국가와 장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예, 수출국 X (원산국 Y)

한 화물 안에서 각각의 로트가 다른 장소 또는 나라가 원산지라면,

필요한 경우, 모든 나라와 장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역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역추적이 가장 적당한 곳을, 예를 들면 기록이 보관된 수출회사, 기재하여야 한다.

식물이 수입되거나 한 국가 내에서 이동하여, 특정 기간동안 재배되고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한 작기(one growing season) 또는 그 이상), 해당 식물의 위생상태가 주로 추가로 재배된 나라 또는 장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원산지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신고 된 수송수단 : _____

이 항목에는 상품이 증명해 준 국가를 떠날 때 어떻게 수송되었는지를 기재한다. “화물선”, “선박”, “항공”, “도로”, “트럭”, “철도”, “우편” 및 “휴대” 같은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알고 있는 경우, 선박의 이름 및 항해 번호 또는 항공기의 비행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송수단은 수출자가 신고한다. 보통 이것은 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된 직후 이용한 처음의 수송수단일 것이다. 종종 화물은 수송수단이 변경, 예를 들면 컨테이너가 선박에서 트럭으로 환적, 하는 것처럼 이동한다. 식별표시가 화물을 구분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수송수단만을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는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사용된 수송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고 된 도착항 : _____

최종 목적지 국가의 첫 번째 도착항구, 또는 모르는 경우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화물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경유 국가가 경유 화물에 대하여 식물위생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경유 항구도 기재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경유 국가의 입항지, 또는 입항지를 모르는 경우, 국가명이 괄호 안에 기재되어야 한다.

입항지는,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시 수출자에 의해 신고 된다. 입항지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신고 된 입항지가 아닌 곳으로 도착하는 것은 위반사항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수입국의 NPPO가 수입 식물위생요건에 입항지를 지정한 경우

에는, 지정된 입항지 중 하나가 신고 되어야 하고 화물은 그 항으로 도착되어야 한다.

신고 된 상품(produce)의 이름 및 수량 : _____

본 항목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며,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다른 규제물품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고, 수입국 NPPO가 그 화물의 내용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단위와 수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적 코드(예, 세관코드)가 추가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단위와 용어(예, 미터법)가 사용 되어야 한다. 다른 용도(예; 번식용 대비 소비용) 또는 가공 정도(예; 건조 대비 신선)에 따라 다른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용도 또는 가공정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기재 사항은 상표, 크기 또는 다른 상업적 용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식물의 학명 (Botanical name of the plants) : _____

이 항목은 수용되는 학명을, 최소 속 수준 그러나 가능하면 종 수준까지, 사용하여 식물, 식물성 산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축사료와 같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나 일부 규제물품은 학명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입국과 수출국의 NPPO들은 적절한 일반명(common name)을 사용하는데 합의하거나 “적절하지 않은(Not applicable)” 또는 “N/A”라고 기입할 수 있다.

증명 문구 (Certifying statement)

“여기에 언급된 식물, 식물성산물 또는 기타 규제물품은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사 및/또는 실험실검사 되었으며, 수입 계약 당사자가 명기한 검역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규제비검역 병해충에 대한 요건들을 포함한 수입 계약당사자의 현행 식물위생 요건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증명한다.”

“기타 병해충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선택 문구).”

특정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존재하거나 또는 규제병해충이 정해진 경우,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상의 증명문구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에 합치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특별한 수입요건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출국 NPPO는 식물위생 우려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병해충에 대한 일반적인 화물의 식물위생 상태를 증명할 수 있다.

수출국의 NPPO들은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에 선택문구를 포함시킬 수 있다. 수입국의 NPPO들은 선택문구가 추가되도록 요청할 수 없다.

“적절한 공식절차(appropriate official procedures)”는 식물위생증명의 목적을 위하여 NPPO 또는 NPPO에 의해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에 의해 수행된 절차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적절한 경우, ISPM들에 부합해야 한다. 이 절차들은 관련 ISPMs를 고려하여 수입국의 NPPO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검역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considered to be free from quarantine pests)”은 식물위생 절차의 적용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수 또는 양의 병해충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검출이나 제거를 위해 사용된 절차에 근거하여, 검역병해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식물위생 절차는 고유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을 가지며,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거되지 않을 일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과 가능성은 적절한 절차를 세부화 시킬 때 고려되어야 한다.

방사선 소독처리를 한 경우, 대상 해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화물에 있을 수도 있다. ISPM 18:2003에 따라 소독처리를 하고, 필요로 하는 반응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소독처리가 실시되었다면, 살아있는 대상 해충 검출이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문구 부분의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국에 의해 제공된 “식물위생요건”은 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공식적으로 기술한다. 식물위생 수입요건은 수입국에 의해 미리 법, 규정 또는 다른 방법(예, 수입허가서와 양자간 또는 다른 약정)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수입계약국(importing contracting party)"은 IPPC 회원국을 의미한다.

II. 부기사항

부기사항은 규제병해충과 관련하여 화물에 대한 특정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부기사항은 최소한이고 간결해야 한다. 수입국 NPPO는 부기사항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며,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의 증명문구에 이미 포함된 유사한 내용을 부기사항으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부기사항의 문구는 식물검역 규정, 수입허가서 또는 양자 합의문 등에 의해 지정되어 있을 수 있다. 소독처리는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사항 난이 아닌 section III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기사항은 추가의 식물위생증명 목적을 위하여 수입국의 NPPO 또는 수출자에 의해 요구되는 특정 식물위생 정보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증명문구 또는 소독처리 항목에 기재된 정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몇 개의 대체 조치를 허용할 경우, 수출국의 NPPO는 실시된 옵션을 부기사항에 적어야 한다.

부록 2에는 수입국의 NPPO들이 자주 요구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부기사항 문장의 예를 제공하고 있다. NPPO가 부기사항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때에는, 부록 2에 있는 표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수입국에 의해 수입허가서가 요구되는 경우, 수입허가 번호는 상호 확인을 위하여 부기사항 란에 기재될 수 있다.

화물이 출발한 뒤에 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수입국이 요구한다면 검사일자를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부기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한다(section 4의 적용 조건 참조).

재수출 같은 향후 식물위생 증명 목적(section 4 참조)으로 공식적 식물 위생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이와 같은 정보는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수입국에 의해 요구되는 부기사항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추가적 공식 식물위생 정보”라는 소제목 하에 추가되어야 한다.

III. 살균 및/또는 소독처리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한다:

날짜

화물에 소독처리가 실시된 날짜를 기재한다. 월은 전체 철자를 써서, 월, 날짜 그리고 년이 혼돈되지 않도록 한다.

소독처리

화물에 적용된 소독처리 종류 (예, 열처리, 방사선처리)

화합물(유효성분)

소독처리에 사용된 화합물의 유효성분

시간 및 온도

소독처리 시간 및 처리 중 온도

농도

적용된 소독처리 농도 및 약량

추가 정보

관련된 추가 정보

기재된 소독처리는 수입국이 수용 가능한 처리여야 하며, 수출국의 NPPO이 감독 또는 위임 하에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하도록 수행 되거나 시작(경유의 경우)되어야 한다.

방사선 소독처리는 ISPM 18:2003의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관의 직인

발급하는 NPPO를 확인하는 공식 봉인, 직인 또는 표식은 수출 식물 위생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출국의 NPPO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 내 단일 직인, 봉인 또는 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서식이 완료된 후 공적 직원에 의해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위에 추가되거나, 인쇄될 수 있다. 직인, 봉인 또는 표식이 중요한 정보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의 이름, 날짜 및 서명

공적 직원의 이름은 인쇄되거나, 타이프로 치거나, 도장으로 찍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대문자(사용 언어가 가능한 경우)로 적어 넣어야 한다. 날짜는 타이프치거나, 도장으로 찍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대문자로 수기 되어야 한다(가능한 경우). 연, 월, 일이 혼동되지 않도록 월은 전체 철자를 써야한다.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의 다른 항목들은 미리 작성되었더라도, 증명서의 날짜는 발행날짜여야 한다. 수입국 NPPO의 요청이 있으면, 수출국 NPPO가 권한을 부여 받은 공적 직원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수출 식물위생증명서는 정식으로 완성된 후에 서명 되어야 한다.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들이 발급된 경우, 증명 데이터는 발급한 NPPO가 입증(authenticate)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 절차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적 직원의 서명, 직인, 봉인 또는 표식과 동등하다. 입증된 전자 증명서 데이터는 완성된 종이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와 동등하다.

재정적 책임 문구 (Financial liability statement)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에 NPPO의 재정적 책임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수출국 NPPO에 결정권이 있다.

6. 재수출 상황과 경유에 대한 고려사항

재수출을 위한 식물위생증명서는 증명문구를 포함하는 문장을 제외하고는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와 동일하다. 재수출 국가의 NPPO는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의 증명문구 해당 박스에 위생증 원본 또는 증명된 사본 첨부 여부, 화물이 재포장 되었는지의 여부, 컨테이너의 교체 여부 및 추가 검사 여부를 표시한다.

화물 내의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다른 규제물품의 구분(identity)이 유지되지 않았거나, 화물이 감염 위험 대상이었거나 또는 상품이 가공되어 성질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되어서는 않된다. 재수출국의 NPPO는 수출자의 요청에 의하여, 적절한 식물위생 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식물위생 수입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산지는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상에 괄호로 여전히 기재되어야 한다.

재수출국가 NPPO가 상품 수입을 위하여 식물위생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나 최종 목적지 국가는 요구하는 경우,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육안 검사 또는 시료에 대한 실험실검사로 충족된다면, 재수출 국가가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의 원산지 난에 원산지 국가를 괄호에 기재하여 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6.1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고려사항

화물이 수입된 후 다른 나라로 수출될 경우, 재수출국의 NPPO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부록 2의 견본 참조). NPPO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화물이 보관, 분할,

다른 화물과 합쳐지거나 또는 재포장 된 경우에도, 병해충 감염 또는 오염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재수출증명을 수행할 수 있다. 화물이 합쳐진 경우, 모든 관련 부분이 확인 가능하고 동일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NPPO는 수입 시 화물과 같이 온 식물위생증명서 원본이나 증명된 사본을 검토하고, 다음 목적지 국가의 요건이 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증명된 사본에서 증명된 것 보다 더 엄격한지 동일한지 또는 덜 엄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화물이 재포장 또는 재선적 되어 그 구분이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감염 또는 오염의 위험이 확인되었다면, 추가의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화물이 재포장 되지 않고, 화물의 식물위생 안전성이 유지되었다면, 재수출 국가의 NPPO는 재수출 화물의 검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동일하거나 덜 엄격한 경우, 재수출국의 NPPO는 추가의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다르거나 더 엄격한 경우, 요건이 검사를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면, 재수출국의 NPPO가 추가의 검사를 실시하여, 화물이 수입국의 식물위생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적지 국가가 재수출국에 의해 충족될 수 없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예, 재배기간 중 검사, 토양검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수출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위생증명서 또는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 이행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원산지 국가에서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상에 신고 되어 있는 경우
- 또는, 목적지 국가의 식물위생 수입요건과 동등하고 부합하는 대체 식물위생 조치(시료에 대한 실험실 검사 또는 소독처리 같은)가 적용된 경우

요구되는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사항은 재수출국가의 NPPO의

활동에 근거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 원본 또는 증명된 사본에 있던 부기사항이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에 옮겨 적어져서는 않 된다.

재수출이 자주 있거나 또는 개시될 때, 이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원산지 국가와 재수출국가의 NPPO들 간에 합의될 수 있다. 재수출국에서 목적지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화물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산지에서 적용된 식물위생조치(예, 재배 중 검사, 토양검사)에 대하여 관련 NPPOs 간에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식물위생증명서 원본 또는 증명된 사본은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와 함께 보내져야 한다.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될 때, 재수출 국가의 NPPO는 재수출국가 내에서의 해당 화물 취급(예, 분할, 결합, 포장, 보관)과 관련된 보증을 제공 한다.

만일 화물이 분할되거나 분할된 화물이 따로 재수출된다면,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들과 수출국 해당 식물위생증명서가 모든 화물들에 첨부되어야 한다.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는 정식으로 완료된 후에만 서명되어야 한다.

6.2 경유

화물이 한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 화물국가에 대한 위험이 구명되지 않는 한 경유국가 NPPO는 관여하지 않는다(ISPM 25:2006).

화물의 식물위생 안전성이 경유 중 손상되고, 경유국가 NPPO가 관여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 NPPO는 이 기준에 기술된 항목에 따라 수출 식물위생증명을 수행할 수 있다.

화물의 식물위생 안전성이 손상되지 않는다면, 경유 중 수송 수단의 변경 또는 한 수송수단 내에서 두개 이상 화물의 환적은 식물위생증명서들의 발급 이유로 고려되어서는 않 된다.

특정한 위험이 구명된 경우, 다른 국가를 경유한 수입화물에 대하여 수입국가들은 수출 국가에게 특정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예, 봉인, 특수 포장)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부속서는 기준의 규정 부분임

부속서 1: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견본

[Original annexed to the IPPC]

No. _____

식물보호기관 _____

수신 : 식물보호기관명 _____

I. 화물의 내용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_____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 _____

포장물의 수 및 내용: _____

식별 표시: _____

원산지: _____

신고된 수송수단: _____

신고된 입항지: _____

신고된 생산품명 및 수량: _____

식물명: _____

여기에 언급된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기타 규제물품은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사 및/또는 실험실 검사되었으며, 수입 체약당사국이 명기한 검역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요건들을 포함한 수입 체약당사국의 현행 식물위행 요건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증명함.

기타 병해충은 사실성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II. 부기사항

[여기에 문구를 삽입할 것]

III. 소독 및/또는 살균처리

일자_____소독처리_____약제(유효성분)_____

기간 및 온도_____

농도 _____

추가정보 _____

발급 기관 _____

(기관의 관인)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 성명_____

일자 _____

(서명)

이 증명서와 관련한 어떤 재정적 책임도 _____ (식물보호기관명)

또는 동 기관 소속 직원 또는 대표에게 귀착되지 아니한다.*

* 선택문구

이 부속서는 기준의 규정 부분임

부속서 2: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 견본

[Original annexed to the IPPC]

No. _____
식물보호기관명 _____ (재수출 계약당사국)
수신: 식물보호기관명 _____ (수입 계약당사국)

I. 화물의 내용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_____
신고된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 _____
포장물의 수 및 내용: _____
식별 표시: _____
원산지: _____
신고된 수송수단: _____
신고된 입항지: _____
생산품명 및 수량: _____
식물명: _____

상기 언급된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기타 규제물품 _____ 은
동 증명서에 첨부된 식물위생증명서 No. _____의 *원본 ☐ 증명된
사본 ☐에 기재된 바와 같이 _____ (원 계약당사국)으로부터 _____
(재수출 계약당사국)에게 수입되었고; 포장 ☐ 재포장 ☐ 원래의 ☐ *새로운
☐ 용기에 담겼으며; 최초의 식물위생증명서 ☐ 및 추가 검사 ☐에 근거
하여, 수입국의 현행 식물위생 요건에 일치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_____ (재수출 계약당사국)에서 저장 중 화물이 감염 또는 오염 위
험에 처하지 않았음을 증명함.

* 적절한 ☐에 ☒ 표시

II. 부기사항

[여기에 문구를 삽입할 것]

III. 소독 및/또는 살균처리

일자 _____ 소독처리 _____ 약제(유효성분) _____

기간 및 온도 _____

농도 _____

추가정보 _____

발행 기관 _____

(기관의 관인)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 성명 _____

일자 _____

(서명)

이 증명서와 관련한 어떤 재정적 책임도 _____(식물보호기관명)

또는 동 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대표에게 귀착되지 아니한다.**

** 선택문안

이 부록은 참고 목적이며 이 기준의 규정 부분은 아니다.

부록 1: 전자 증명, 표준 XML 체계와 교환 방식에 대한 정보(2014)

서언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는 종이 식물위생증명서의 전자적 동일본이며,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이 수용한다면, 사용될 수 있다. 수출국 또는 재수출국의 NPPO가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수입국의 NPPO가 직접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준의 모든 요건과 절차는 전자식물위생증명서에 적용된다.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사용할 때, NPPOs는, Extensible Markup Language(XML), 표준화된 메시지 구조 및 내용 그리고 표준화된 교환 프로토콜을 사용한, 전자 식물위생증명서의 발급, 전송 및 수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부록은 이들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IPPC 웹사이트 (<http://ePhyto.ippc.int>)의 페이지에 연결되어 - IPPC 및 외부 웹사이트와 문서들- 이 부록에 포함된 정보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링크들은 본분에 "Link 1", "Link 2"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생산하기 위한 다음의 조화된 요소들을 포함해야한다.

1. XML 메시지 구조

NPPOs는 전자 식물위생증명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하여 World Wide Web Consortium's (WC3) XML (Link1)을 사용해야한다.

식물위생 XML 메시지 구조는 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UN/CEFACT) 위생 및 식물위생

(SPS) XML schema([Link 2](#))와 XML data mapping에 근거하며, 이는 식물위생증명 데이터가 XML schema 내에 어디에 위치하여야하는지를 알려준다.

식물위생 XML data mapping은 수출([Link 3](#))과 재수출([Link 4](#))을 위한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2. XML schema 내용

자동 전자 의사소통과 식물위생증명 데이터 프로세싱을 촉진하기 위하여, NPPOs는 전자 식물위생증명서의 XML 메시지와 관련된 데이터의 표준화된(조화된) 용어, codes와 본문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적정한 codes가 있는 경우 free text(예, 표준화되지 않은)는 제한되어야 한다.

날짜와 국가명은 표준화된 text가 있으며, free text는 필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물과 병해충의 학명, 화물 설명, 소독처리, 부기사항, 입항지, 상당량의 조화된 용어의 목록, codes와 text는, 개발 중이며 사용 가능할 것이다. 적당한 용어, text, 가치(value)가 목록에 없을 경우 free text가 삽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화된 용어 목록을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개발 중이며, IPPC 웹사이트 (<http://ePhyto.ippc.int>)에 기술될 것이다. NPPOs는 이 절차를 이용하여 새로운 조화된 용어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데이터 요소들은, 용어 및 text의 조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free text를 넣을 수도 있다.

XML 메시지 내의 데이터 요소를 위해 넣어야 하는 더 자세한 정보들은 다음에서 제공된다.

2.1 국가명

국가명(예, 원산국, 수출국, 재수출국, 경유국, 최종 목적국)은 표준화를 위한 국제기구(ISO)([Link 6](#))의 두자의 국가 codes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2.2 식물과 병해충의 학명

화물 내의 식물명과 식물성 산물이 유래된 식물, 규제병해충의 학명은 IPPC 웹사이트(<http://ePhyto.ippc.int>)([Link 7](#))에 있는 학명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2.3 화물의 설명

상품의 종류와 포장의 종류가 화물의 설명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품은 IPPC 상품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되도록 권장된다([Link 8](#)). 또한 포장의 종류는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권고 21([Link 9](#))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권장된다.

화물의 설명에 대한 다른 요소들은, 가능하다면,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무게, 부피와 높이 (UNECE 권고 20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권장됨 ([Link 10](#)))
- 신고된 운송수단 (UNECE 권고 19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권장됨 ([Link 16](#)))
- 신고된 입항지 (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portation Locations (UN/LOCODE) 또는 국가 이름을 사용 ([Link 15](#))하여 설명하도록 권장)

2.4 소독처리

소독처리 종류는 소독처리 종류에 대한 IPPC의 조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하도록 권장된다([Link 11](#)). 유효성분은 Codex Alimentarius의 농약 인덱스([Link 12](#))를 사용하여 표기되도록 권장된다. 다른 지표들(예, 농도, 약량, 온도 그리고 처리시간)은 UNECE 권고 20을 사용하여 설명되도록 권장된다([Link 13](#)).

2.5 부기사항

부기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권고된 문구는 부록 2에 제공되어 있으며, IPPC의 부기사항 코드를 사용하여 설명되도록 권장된다 (*Link 14*). Free text는 IPPC 웹사이트에 있는 부기사항을 보완하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부기사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2.6 승인된 검역관 이름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승인된 검역관 이름이 전자 식물위생증명서 각 종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안전한 데이터 교환 메카니즘

NPPOs는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자국의 IT 시스템의 안전성을 책임져야한다.

전송 중에는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전자 식물위생증명 데이터의 NPPOs 간 전자적 교환이 안전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NPPOs는 최소 128비트 암호화된 안전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송 전 전자 식물위생증명 데이터는 전송 후에는 원상태가 되는 추가의 암호화 (*Link 17*) 대상일 수 있다.

수출국의 NPPO에서 수입국의 NPPO로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은 양쪽에 맞는 안전한 IT 메카니즘(예,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SOAP), Secure/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S/MIME), File Transfer Protocol (FTP), Representative State Transfer (REST))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수출국의 NPPO는 화물의 실제 전자 식물위생증명서의 번호를 수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NPPOs 간 메시지 교환의 상태에 대한 의사소통은 UN/CEFACT에서 권고된 표준 메시지(*Link 18*)를 따라야 한다.

NPPOs는 전자 식물위생증명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 보수 또는 갑작스런 시스템 실패로 교환 메커니즘이 중단된 경우에는, NPPO는 가능한 한 빨리 다른 NPPO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재수출을 위한 전자 식물위생증명서

종이 증명서만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수출 식물위생증명서 원본 또는 확인된 사본이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종이와 전자 식물위생증명서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1 원 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전자양식인 경우 재수출 전자 식물위생 증명서

수출과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모두 전자 양식일 경우, 수출 전자 식물 위생증명서가 재수출 전자 식물위생증명서에 전자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4.2 원 식물위생증명서가 종이 양식이고 재수출은 전자 식물위생증명서인 경우
수출 식물위생증명서는 종이 양식이고, 재수출용 식물위생증명서는 전자 양식인 경우, 원 수출용 식물위생증명서의 스캔(PDF 또는 편집이 안되는 다른 방법)을 재수출용 전자 식물위생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3 원 식물위생증명서가 전자양식이고 재수출은 종이 식물위생 증명서인 경우

원 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전자 양식이고,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종이 양식인 경우, 수출 전자 위생증명서는 인쇄되어 재수출국 NPPO가 도장, 날짜, 서명을 통해 유효화 하여야한다. 수출 전자 식물위생증명서의 인쇄 물은 확인된 사본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종이 양식 상태로 재수출용 식물위생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5. NPPOs에 의해 발행된 전자 식물위생증명서의 관리

5.1 회수 문제 (Retrieval issue)

수입국 NPPO가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수출국 NPPO는 수입국 NPPO의 요청에 의해, 원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5.2 수정 및 대체

전자 식물위생증명서의 어떤 정보가 발행된 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원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는 취소되고, 수정된 대체 전자 식물위생증명서가 이 기준에서 기술된 대로 발행되어야 한다.

5.3 발송취소

수출국 NPPO가 전자 식물위생증명서가 발행된 후에 화물이 발송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게 되면, 수출국 NPPO는 관련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취소 하여야 한다.

5.4 확인된 사본

전자 식물위생증명서의 확인된 사본은, 데이터가 진본임을 NPPO가 확인 해 준 (도장, 날짜와 서명) 전자 식물위생증명 데이터의 인쇄본이다.

인쇄본은 IPPC 모델 식물위생증명서에서 제공한 표준 문구를 따른 양식 이어야 하고, 식물위생증명서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국 NPPO가 수용한다면 인쇄물은 XML 양식의 XML 데이터일 수도 있다.

6. 신고된 화주의 이름 및 주소

종이 식물위생증명서의 경우 “신고된 화주의 이름과 주소”에 화주가 알려져 있지 않고 수입국 NPPO가 이를 수용할 경우 “주문자 (To order)”가 임시로 쓰일 수 있다.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는 화물 정보가 화물이 도착하기 한참 전에 올 수 있으므로, 이는 전자 식물위생증명 데이터의 입항 전 확인을 허용할 것이다.

“주문자”를 쓰는 대신에 NPPOs는 전자 식물위생증명서가 수입국에서 해당

화물에 책임이 있는 접촉인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이 부록은 참고 목적이며 이 기준의 규정 부분은 아니다.

부록 2: 부기사항 추천 문구

1. 화물*은 검사되었으며 _____(병해충 명 또는 흙 [상세 정보])에 감염되지 않았음.
2. 화물*은 실험실검사(구체적인 방법 포함 가능) 되었으며 _____ (병해충 명)에 감염되지 않았음.
3. 식물을 재배한 매체는 재식 이전에 실험실 검사되었으며 _____ (병해충 명)에 감염되지 않았음.
4. _____ (병해충 명)은 _____ (국가명/지역)에 존재하지 않음/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음.
5. 화물*이 생산된 곳은
_____ (병해충명)에 대한 무발생 지역**
_____ (병해충명)에 대한 저발생 지역
_____ (병해충명)에 대한 무발생 생산 장소**
_____ (병해충명)에 대한 무발생 생산 포장**
6. 생산장소**/생산지역/포장**은 재배기간 동안 검사되었으며 _____(병해충 명)에 감염되지 않았음.
7. 이 식물/모 식물(mother plant)은 최근 재배기간*** 동안 검사되었으며 _____(병해충 명)에 감염되지 않았음.
8. 이 식물은 시험관에서 생산(시험관 기술 명기)되었으며 _____(병해충 명)에 감염되지 않았음.
9. 이 식물은 실험실 검사된 (방법이 명기될 수 있음) 모 식물체로부터 유도되었으며 _____(병해충 명)에 감염되지 않았음.
10. 이 화물*은 _____(프로그램/특이적 수출요건 참조 또는 양자 합의)에 따라 수출을 위해 생산, 준비되었음.
11. 이 화물은 _____(병해충 명)에 저항성 품종에서 생산되었음.

12. 재식용 식물은 _____(규제비검역병해충 명시) 식물위생 수입
요건에 의해 설정된 _____(허용수준 명시)을 준수함.

* 일부분에만 적용될 경우 명시될 수 있음

** 가능한 경우 추가 : "완충지역 주변지역 포함 "

*** 적정할 경우 횃수/재배기간 또는 특정 기간 추가